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 풍요로운 나라 함께하는 선진경제 • 고품질 정책으로 신뢰받는 재경부
	보도일시	2006. 12.22(금) 조간부터		
생산일	2006. 12. 20(수)	생산부서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	
담당과장	박영춘(2150-2370)	담당자	이상규 사무관(2150-2372) 김동곤 사무관(2150-2374)	

제목 :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

정부는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을 확정·발표하였음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은

① 서민에 대한 신용지원 강화, ②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제고, ③ 대안금융 활성화, ④ 사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등 4가지 기본방향에 따라 금융선진화기획단 논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였음

① 서민에 대한 신용지원 강화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지원 확대, 공공정보 활용 등을 통한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서민들의 제도금융권 접근성을 제고

②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제고

- 수표발행 허용, 직불카드 취급, 상호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 등 업무규제를 완화하고 리스크가 적은 업무를 중심으로 신규업무를 확대하여 서민금융 활성화 도모

- 금감위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감독강화, 상호금융기관 자율감독기능 강화 등 서민금융기관의 감독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서민금융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③ 대안금융 활성화

- 휴면예금, 휴면보험금을 재원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창업자금 및 생활자금 등을 지원
 - * 차별화된 복지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T/F를 구성

④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 효율적인 대부업 관리·감독을 위해 우선적으로 장관급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하고 단기적으로 대부업 관리·감독의 총괄기능(Control Tower)을 수행

* 경제부총리(주재), 금감위원장, 행자장관, 법무장관으로 구성

-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대부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감독상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여 종합적인 「대부업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을 마련

- 시·도지사의 효율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업무 집행을 유도하고, 검찰·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효과적 단속을 추진

※ 대부업 관리·감독권 조정 등 법 개정사항은 중장기검토

⑤ 사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단속·홍보강화

-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별로 불법사금융 단속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대책발표후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대부업법 위반행위를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범위에 포함할 예정
- 또한 경찰청의 생계침해형부조리 통합신고센터(1379), 금감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 등을 중심으로 사금융 피해 상담 및 신고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

□ 이와같이 서민에 대한 신용지원 강화,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제고 등으로 보다 많은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대안금융 활성화, 사금융 영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이용기회 확대 및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정부는 주기적으로 서민금융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

별첨 :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 피해 방지대책

2006. 12. 22

재정경제부
농림부
기획예산처
경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산림청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금융감독위
중소기업청

- 목 차 -

I. 서민금융 현황 및 평가	1
1. 추진배경 및 그동안 진행경과	1
2. 서민금융 현황	2
3. 서민금융 부진원인 및 시사점	4
II. 서민금융대책 기본방향	5
III.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6
1. 서민에 대한 신용지원 강화	6
2.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영업력 확충	8
3. 서민금융기관 감독제도 개선	11
4. 대안금융 등의 활성화 도모	13
5. 서민금융 실태조사 강화	14
IV. 사금융 피해 방지대책	15
1. 대부업 관리감독제도 개선	15
2.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단속·홍보강화	16
V. 향후 추진계획	18

I. 서민금융 현황 및 평가

1. 추진배경 및 그동안 진행경과

-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안정성과 재무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제도금융권 접근이 차단
 - 저축은행,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들도 영업력의 위축으로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에 한계
 - 저신용 서민들이 사금융에 의존하면서 금리부담이 증가하는 등 금융부문에서의 양극화 심화
 -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
- 06.2.15일 대통령주재 영세자영업자 금융제도 정책화 토론회에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추진할 것을 지시
 - 서민금융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서민금융활성화 T/F를 구성(06.3)
 -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금융연구원, 06.5~8)
 - 그동안 4차례에 걸친 금융선진화기획단 논의를 통해 서민금융 활성화방안 초안을 마련
 - 관계부처 실무조정회의, 경제상황점검회의 등을 거쳐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을 마련

2. 서민금융 현황

- 민간신용정보사의 신용등급분류에 따르면 제도금융권 이용이 가능한 1~7등급 계층은 약 2,845만명 수준
-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8~10등급의 저신용자가 560만명 수준에 이름

신용등급	인원(비중)	이용가능 금융기관
1~6등급	· 2,687만명(78.8%)	· 은행권
1~7등급	· 2,845만명(83.4%)	· 서민금융기관
8~10등급	· 564만명(16.6%)	· 대부업 등 사금융

* 7등급 158만명 수준

- 서민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서민의 자금수요에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서민금융기관 가계대출 규모 : (00말) 44조원 → (05말) 86조원(95.9% 증가)

- 그 결과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사금융을 이용하면서 금리부담이 가중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

* 사금융 이용자는 450만명, 대출잔액은 40조원 수준으로 추정(05.8, 금융연구원)

* 서민금융기관 이용고객 중 30%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경험

○ 또한, 서민금융기관의 수익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낮은 건전성, 부실에 대한 우려 등으로 서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

* 당기순이익 : 저축은행 (04)△1,555억원 → (05) 3,534억원 → (06상) 2,050억원
상호금융기관 (04)1.1조원 → (05)1.2조원 → (06상)1.0조원

* 연체율(05말) : 저축은행 20%, 농협 4.3%, 수협 9.9%, 신협 13.9%, 새마을금고 6.8%

* 서민금융 실태조사 결과(06.8) 은행 및 서민금융기관 종사자는 높은 대손율 등으로 저신용자에 대한 소액신용대출에 부정적

□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4개 대안금융기관에서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상황

*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아름다운세상기금, 창원지역 사회복지은행 등 국내 4개 대안금융기관에서 448건에 총 79억원을 지원

□ 대부업법의 제정을 통한 양성화조치로 등록대부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3~4만개의 미등록 불법대부업자가 영업중인 것으로 추정

* 등록대부업(개) : (02말)2,223 → (04말)11,540 → (05말)14,556 → (06.6)16,367

○ 자치단체의 대부업감독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

□ 금감원, 경찰 등을 중심으로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 사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나 고리대금 및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는 지속

3. 서민금융 부진원인 및 시사점

서민금융 부진원인

정책적 시사점

◆ 서민들은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 접근이 곤란

◆ 신용보증지원 확대, 신용 정보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서민들의 제도권 금융 기관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



◆ 서민금융기관은 예대업무 중심의 단순한 영업구조, 규모의 영세성, 효율적인 감독부재 등으로 서민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규제완화, 신규업무 확대, 감독제도 개선 등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을 제고하여 서민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할 필요



◆ 현재 일부 대안금융기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재원부족 등으로 미흡한 상황

◆ 휴면예금, 기부금 확대 등을 통해 대안금융을 활성화하여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자활지원을 활성화할 필요



◆ 서민들이 낮은 신용도, 정보 부족 등으로 사금융에 의존하면서 고금리 및 불법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

◆ 대부업 등 사금융 영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



II. 서민금융대책 기본방향

□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제고를 통해 서민의 자금수요를 최대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흡수하고 사금융 영역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

① 서민에 대한 신용지원 강화

- 신용보증 지원 확대,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등 서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제도금융권 접근성을 제고

② 서민금융기관의 기능제고

-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와 신규업무 확대를 통해 서민금융기관의 영업력을 확충함으로써 서민금융활성화 유도
-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개편하여 서민금융기관의 건전한 발전 도모

③ 대안금융 활성화

- 휴면예금,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대안금융을 활성화하여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④ 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보호 강화

-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개선,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단속강화 등 사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 서민금융 이용실태 및 서민금융대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

-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고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

Ⅲ.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1. 서민에 대한 신용지원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제도 및 신용정보 인프라 등 금융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여 원활한 자금공급이 곤란

* 사금융 이용자중 35%는 제도금융권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06.6 금감원 설문조사)

□ 신용보증지원 확대,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하여 자영업자 등 서민의 제도권 금융기관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

(2) 개선방안

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공급 확대

○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 공급규모를 확대하여 서민들의 제도금융권 접근성을 제고

* 지역신보 보증잔액 : (04) 26조원 → (05) 34조원 → (06) 4.0조원 → (07) 4.2조원

②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 공공정보 집중 확대 등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서민의 금융기관 접근성을 제고

- 공공정보의 집중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금년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

③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활성화

-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에 은행, 보험사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 저축은행,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이 주로 참여
- 다양한 대출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운영

④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 강화

-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 문제는 마무리 단계에 진입
 - 04.4월 382만명(정점)에 이르던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06.9월말 현재 283만명으로 크게 감소
 - 개인회생·파산 등 법적 구제장치도 자리 잡아가고 있음
 - *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천명) : (05상)35 → (05하)52 → (06상)77
-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한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실질적으로 지원
 -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저소득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영세자영업자 운전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등 지원
-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용관리교육을 강화하여 신용의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제고

2.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영업력 확충

(1) 현황 및 문제점

- 서민금융기관은 **예대위주의 단순한 영업구조, 규모의 영세성, 자산건전성 취약** 등으로 서민에 대한 원활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리스크가 적은 업무를 중심으로 **신규업무는 확대**하여 서민금융기관의 영업력을 확충할 필요

(2) 개선방안

① 서민금융기관 중앙회의 자기앞수표 발행을 허용

-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전제로 서민금융기관 중앙회·연합회에 대해 자기앞수표 발행을 허용

②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확대

-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현재의 시도단위에서 **동일 경제생활권역**으로 확대

* (예) 현재 11개 권역에서 6개 생활권역(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광주호남, 충청, 강원경북)으로 확대

- 다만, **재무구조·소유구조***가 건전한 저축은행(대주주 지분비율 일정규모 이하)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도시지역 집중방지(당초 영업구역 50% 이상대출) 등을 위한 **보완책도 동시에 추진**

* 자기자본비율 8%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상 저축은행 : 56개

* 저축은행 평균 대주주 지분비율 70%수준, 50% 이하 22개

③ **신협중앙회의 대출범위를 확대**

- 신협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범위를 확대하여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 * 현재는 조합의 동일인한도(자기자본의 20% 또는 2억원중 큰 금액)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취급 허용
- 조합의 동일인대출한도의 50%를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을 허용
 - * 다만, 중앙회 대출채권 부실화 방지대책, 조합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도 동시에 마련

④ **상호금융기관의 ABS 발행을 허용**

-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자산유동화가 가능한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실채권 및 우량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
- 최근 사업연도 외부감사의견이 “적정”인 신협 및 새마을금고에 대해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⑤ **서민금융기관에 대해 수익증권 판매를 허용**

- 현재 수익증권 판매는 불완전 판매 방지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 은행, 보험사에 대해서만 허용
 - * 수익증권 판매비중 : 증권 63%, 은행 32%, 증권 63%, 보험 1.5%
- 불완전 판매 최소화를 위해 펀드판매시장의 성숙도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판매를 허용

⑥ 서민금융기관에 대해 직불카드 발행을 허용

- 직불카드는 신용리스크가 적은 반면 결제계좌 유치 등을 통해 저원가성 예금 확보가 기대되나 서민금융기관에서 취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중앙회와 공동으로 영위하는 방식으로** 서민금융기관에 대해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
 - * 서민금융기관 직불카드 운용방법
 - 중앙회 : 공동상품 개발, 가맹점 관리, 결제대행(2일간 신용위험 보완) 등
 - 단위조합 : 공동상품 판매, 회원 관리 등

⑦ 각종 정책성 자금 집행시 서민금융기관을 이용

- 현재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시금고, 공무원연금급여** 등을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집행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제도개선 추진
 - *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계약을 통해 취급할 수 있으며 현재 은행 및 저축은행에서 취급
 - *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상 공무원연금 급여수령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및 우체국으로 한정
 - * 지방재정법상 자치단체 금고업무 취급금융기관은 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 한정

3. 서민금융기관 감독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서민금융기관은 규모가 영세하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상황 변화에 따라 부실화 가능성이 상존
- 서민금융기관의 감독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

(2) 대응방안

① 새마을 금고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 금감위에 연합회 및 금고에 대한 직권검사 요청권을 부여하고 실효성 있는 검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추진

※ 농·수·산림조합은 건전성 기준,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등 건전성 감독을 금감위가 수행중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포괄적 감독	금감위	금감위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행자부
건전성 감독	금감위	금감위	금감위	금감위	금감위	행자부

② 상호금융기관 중앙회의 자율감독기능 강화

- 중앙회 검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검사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 검사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

③ 서민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

- 상호금융기관 중앙회 회장 비상임화(수협, 새마을금고), 전문이사 비중 확대 등 중앙회의 지배구조 개선
 - * 중앙회장 비상임화 : 농협법 개정(04.12), 신탁법개정안 자체규제심사중
- 상호저축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자격 및 선임비율을 강화하고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

④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위 감독을 강화

- 대형저축은행에 대한 자본충실도, 건전성 분류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은행 수준으로 강화
 - * 적기시정조치 기준(BIS 자기자본비율)
 - 은행 : 경영개선권고 8%미만, 요구 6%미만, 명령 2%미만
 - 저축은행 : 경영개선권고 5%미만, 요구 3%미만, 명령 1%미만

⑤ 서민금융기관의 예금보험기금을 확충

-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은행과의 여신한도설정, 채권발행등을 통해 부족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시 저축은행 계정 부족해소 문제도 포함하여 검토
 - * 예보에서 목표기금제·차등보험료 도입 등 보험료율 체계개선과 저축은행 계정 부족해소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예금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중(06.10~07.3)
-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예금자보호기금 부족시 정부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 현재 농·수협은 정부로부터 차입 또는 출연이 가능하나 신탁,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은 정부지원 근거가 없음

4. 대안금융 등의 활성화 도모

(1) 현황 및 문제점

-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금융소외계층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사금융을 이용하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
 - 현재 4개 대안금융기관에서 저소득층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
 - * 신나는조합, 사회연대은행, 아름다운기금, 창원지역 사회복지은행 등 총 4개의 대안금융기관에서 448건에 대해 저리로 자금을 지원
-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

(2) 개선방안

- 휴면예금·휴면보험금을 재원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자금지원 업무를 수행
 - 공익재단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창업자금 및 직업훈련 지원, 기타 복지사업을 수행
 - * 차별화된 복지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관계부처·민간전문가로 T/F를 구성
 - 공익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독립성·자율성을 보장하되,
 -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전문성과 공익성을 보완

5. 서민금융 실태조사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서민금융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분석 및 서민금융이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지 못함
- 서민금융 이용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실효성있는 서민금융 시책을 수립·추진할 필요

(2) 개선방안

- 서민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업무보고서 양식을 서민금융 이용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개선
 - 금감원은 서민에 대한 금융서비스 공급 현황을 주기적(분기)으로 조사·분석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토록 지원
 - 금감원 등 검사기관은 현장검사시 서민금융 실태를 필수 검사항목으로 지정·운영(보고의 정확성 도모)
- 대부업자에 대해 분기별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대부업 이용실태를 파악
- 서민금융에 대한 정책 및 감독의 효율성 제고,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서민금융업무 담당기관의 기능을 강화

IV. 사금융 피해 방지대책

1. 대부업 관리감독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시·도가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나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미흡한 실정
 -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필요

(2) 개선방안

- 효율적인 대부업 관리·감독을 위해 우선적으로 장관급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
 - * 경제부총리(주재), 금감위원장, 행자장관, 법무장관으로 구성
 - 단기적으로 대부업 관리·감독의 총괄기능(Control Tower)을 수행
 -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대부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감독상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여 종합적인 「대부업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을 마련
 - 시·도지사의 효율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업무 집행을 유도하고, 검찰·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효과적 단속을 추진
 - * 대부업 관리·감독권 조정 등 법 개정사항은 중장기검토
- 대부업 협회의 범정기구화 및 자율규제기능 강화
 - 회원사 현황파악, 통계관리, 민원상담 등 일정수준의 자율 규제기능을 부여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장치 보완
 - 대부업 등록정보조회시스템 구축, 상호중 “대부업” 사용 의무화, 계약 중요사항 자필기재 의무화 등 추진

2.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단속·홍보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사금융을 이용하면서 고금리 피해 등이 사회문제화
 - 사금융 영역에 대한 단속강화와 교육 및 홍보강화를 통해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구제할 필요

(2) 개선방안

-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한 단속강화
 - 사회취약계층 생계침해형 부조리 단속과 연계하여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등 특별단속 실시(대책발표후 2개월간)
 -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별로 불법사금융 단속추진단 및 단속전담반을 편성하여 운영
 - 대부업법 위반행위를 신고보상금 지급대상범죄에 포함하여 국민신고 유도로 단속의 효율성 제고
 - 경찰청-금감원간의 Hot-Line을 첩보수집 및 정보공유의 창구로 적극활용하여 신속한 협조관계 유지
 - 기업형 무등록 대부업자 및 반복적·악의적인 고리사채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 불법사채업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위주로 하고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검찰, 법원등과 협의

□ 사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강화

- 경찰청의 생계침해형부조리 통합신고센터(1379), 금감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 등을 중심으로 사금융 피해 상담 및 신고
- 대부업법 관련 법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
 - 여성단체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교육·홍보 추진
 - 포스터, 리플렛 등을 제작·배포하고 서민에 적합한 맞춤형 홍보를 위해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광고를 실시
-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 활성화
 - 초등학교용 금융교육 수업지도를 개발·보급하는 등 어린이와 청소년의 금융이해력 증진 도모

□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 물품 등의 판매와 연계한 유사수신행위 등의 경우에도 금지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등 유사수신행위의 범위확대
 - * 현재는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기획조사(06.11~12)를 바탕으로 개선방안 마련

V. 향후 추진계획

- ◇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 도모
 -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의 조속한 시행
 -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및 사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대책은 즉시 추진
 - 제도개선 또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개정으로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07년 상반기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 상호저축은행법 등 법령개정 사항은 07년중 마무리

-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금융피해 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
 - 서민금융대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보고
 - 서민금융 이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서민 금융 대책에 반영

-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 서민금융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

< 참고 > 주요과제 추진계획

추진과제	필요조치	소관부처	추진시기
1. 서민에 대한 신용지원 강화			
○ 신용보증 지원확대	예산확보	중기청	07년중
○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신용정보법 개정	재경, 금감	07년중
○ 서민 맞춤대출안내서비스 활성화	제도개선	금감위	07상반기
○ 금융채무 불이행자 지원	제도개선	금감위	07상반기
2. 서민금융기관 규제완화 및 업무확대			
○ 서민금융기관 수표발행 허용	수표법시행령 개정	재경, 법무	07상반기
○ 저축은행 영업구역 확대	저축은행법 개정	재경부	07년중
○ 신탁중앙회 대출범위 확대	신탁법 개정	재경부	07년중
○ 상호금융기관 ABS발행 허용	자산유동화법 개정	재경부	07년중
○ 서민금융기관 수익증권 판매 허용	신탁법 등 개정	재경부	07년중
○ 서민금융기관 체크카드 허용	저축은행법 등 개정	재경부	07년중
○ 서민금융기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취급확대	제도개선	중기청	07상반기
○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시금고, 공무원연금 집행	지방재정법 등 개정	행자부	07년중
3. 서민금융기관 감독 강화			
○ 새마을금고 금감위 감독 강화	새마을금고법 개정	행자부	07년중
○ 상호금융기관 자율감독기능 강화	제도개선	금감위 등	07상반기
○ 서민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	신탁법 등 개정	재경부 등	07년중
○ 저축은행 금감위 감독 강화	감독규정 등 개정	금감위	07상반기
○ 서민금융기관 예보기금 확충	신탁법 등 개정	재경부 등	07년중
4. 대안금융 활성화			
○ 대안금융 활성화	휴면예금법 제정	재경부 등	07년중
5. 사금융 피해 방지			
○ 대부업 감독제도 개선	대부업법 개정	재경부	07년중
○ 불법대부업자 단속 및 홍보강화	제도개선	금감위 등	07상반기
○ 유사수신행위 규제강화	유사수신통제법 개정	재경부	07년중
6. 서민금융 실태조사 강화			
○ 금융기관 보고서식 개정	감독규정 개정	금감위	07상반기
○ 대부업 이용실태 파악	대부업법 개정	재경부	07년중